

규제완화 관련동향

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7-72호(97. 5. 13)

- 제목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및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내용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 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교육은 에너지 관리공단이 행한다”를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 열관리사협회가 행한다”로 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제35조 (검사의 면제)

① (신설)

법 제58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대상기기의 제조업자,설치자 또는 사용자가 보험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검사가 면제되는 보험의 종류 및 위험의 담보 범위는 별표 10의 1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설에 따라 제 1항에서 제2항으로 변경 및 내용개정]

현	행	개	정
법제 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 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③ (신설)

제 1항의 보험에 가입하여 해당검사를 면제받은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는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 1항의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해당보험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1항 2호를 제2항 2호로 변경)

⑥ (현행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 ")

⑦ (현행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2항 및 3항을 제5항 및 6항으로 변경)

⑧ (현행 제5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4항을 제7항으로 변경)

⑨ (현행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1항 제2호를 제2항 제2호로,제5항을 제8항으로 변경)

⑩ (현행 제7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1항 제2호 및 3호를 제2항 제2호로, 제5항을 제8항으로 변경)

제49조의 3(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 관리대행기관 지정등) : 신설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1의 2의 지정요건을 구비하고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 계획서

제50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현행과 동일하며 “교육은 공단에서 행한다”를 교육은 “공단 및 한국 열관리사 협회에서 행한다”로 개정.

<별표10의1>

검사면제보험의 종류 및 위험담보 범위

검사면제보험	보험의 위험담보 범위	검사면제범위
제조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 완성, 판매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위험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	제조검사 설치검사
사용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 위험 및 기계위험 2.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위험	계속사용안전검사 성능검사

<별표11의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법 제49조의 3)

장		비		기 술 인 력
장 비 명	보유대수	장 비 명	보유대수	
1. 급수유량계	3대이상	6. 표면온도계	3대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금속·화공 및 요업·전기 또는 에너지분야 기술사 1인이상 2.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7조의 별표 11에서 지정한 국가기술 자격자 및 인정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각 5인이상
2. 급유유량계	3대이상	7. 매연측정기	1대이상	
3. 가스분석기 (CO2,O2,CO)	5대이상	8. 스톱워치	5대이상	
4. 열전대온도계	2대이상	9. 증기압력계	3대이상	
5. 표준온도계	3대이상	10. 수질분석계	1대이상	
		11. 증기건도측정기	1대이상	

환경부 고시 제 1997-37호(97. 4. 24)

- 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 및 27조에 의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제 1996-168 : 96. 12. 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
- 개 정 조 항 : 제4조(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연료용 유류 공급 판매금지)
(세부내역 생략) 제6조(저유황유의 공급·사용지역) 제11조(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제13조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의 범위) 제18조(지역난방열 사용)

○ 주요관련 개정내용(B-A 사용에서 B-C사용 가능토록 완화)

별표1의 연료의 황함유기준중 유류란의 벙커-A, 벙커-B, 벙커-C를 구분하는 선을 삭제하고,1997년 6월 30일까지의 황함유기준을 "1.0%이하"로,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의 황함유기준을 "0.5%이하, 1.0%이하"로, 2001년 7월이후부터의 황함유기준을 "0.3% 이하, 0.5%이하, 1.0%이하"로 각각 개정한다.

별표2의 나. 중유란중 (1)의 "B-C유"를 "중유"로, (2) 및 (3)란의 "B-A유(LSWR 포함)"를 "중유(LSWR 포함)"로 각각 개정한다.

별표5중 "업무용시설의 연료사용(제12조 관련)"을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사용(제 14 조 관련)"으로 개정한다.

별표6중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제13조 관련)"을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지역난방방식 공동주 택의 연료사용(제14조 관련)"으로 개정한다.

한전 수전전력 기본요금 계산방법 개선 및 전력량 요금인상(97. 7. 1)

1. 한전 수전 전력 기본요금 계산방법 개선

가. 개선 현황

현 행 (97. 7. 1 개선 내용)	협회의 건의내용	중 전
해당월의 기본 요금은 직전 여름철(7~9월)의 사용전력과 해당월의 사용전력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	당월 또는 직전 3개월중 최대전력 기준 부과	해당월의 기본 요금은 직전 12개월 중에서 가장 높은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부과

계산예.: 97년 7월의 기본요금은 97년 7월 및 96년 8월, 9월 최대치와 97년 7월 최대치중 높은것을 기준.

나. 향후 전력 관리의 중요성

○ 하계 전력 관리 강화

하계에 불시의 열병합발전설비의 불시 고장등이 발생하면 한전으로부터 높은 전력(peak) 을 수전하게 되며 이는 1년동안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O/H를 적절하게 실시하거나 하계전 사전 점검등으로 불시고장의 사전예방이 필요할 것임.

○ 냉방 수요 관리 강화

냉방 수요는 가능한한 흡수식등 전력 수요가 적은 시스템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야 전력을 이용한 축냉(빙축열 등) 방식의 경제성도 검토가 요망될 것임.

다. 협회에서 추진내용

- 1996. 9. 13 (금) : 정부 고위 인사 및 관계기관 책임자 초청간담회 개최
- 1996. 10. 20~25 : 자료 조사 (기본 요금 및 peak 전력)
- 1996. 11. 5 : 한전 수전 전력 기본요금 개선 방안 건의(통산부)
- 1996. 11. 5 이후 : 추진 협의
- 1997. 7. 1 : 기본 요금 제도 개선 확정

2. 전력량 요금인상 : 각부문별 평균 5.9%인상